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계약안내문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께서는 본 안내문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환불 처리됩니다.

입주지정기간 : 2026. 12. 7.(월) ~ 2027. 2. 28.(일)

계약절차(요약)

예비입주자의 계약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계약안내 통지 → **임대조건 확인 및 사전방문** → (희망 시) **임대조건 상호전환* 신청** →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 '임대조건 상호전환'이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월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계약대상자께서는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른 기본 **임대조건**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방문기간 내에 배정받은 동호에 **사전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별 기본 임대조건에서 임대보증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월임대료로 **상호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므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11월30일(월)까지** 임대조건 상호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기본 임대조건으로 적용됨.)

4) 개인별 임대조건이 확정되면,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임대보증금의 20%)을 납부하셔야 하며, 가상계좌 정보는 납부기간 전에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5)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 중에 선택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12월7일(월) 16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개인별 임대조건 확인

- 개인별 임대조건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드립니다.
  번호변경 및 수신오류 등으로 인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신 분은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전환 조건 등 자세한 임대조건은 **본 안내문의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은 계약자의 소득, 임대조건 상한대상자* 여부 등에 따라 확정된 것이므로, 다른 기본 조건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임대조건 상한대상자'**
> 1.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배정세대 사전방문

▪ 계약 체결 전 배정받은 동호를 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기간 :** **2026. 11. 25.(수) ~ 11. 30.(월), 10:00 ~ 16: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방문예약 :**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051-721-2470)로 **유선 연락**하여 **방문일정 사전예약**

▪ **방문대상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가족이 대리 방문하는 경우 계약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상호전환 신청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호전환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 상호전환'이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월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기한 :** **2026. 11. 30.(월)까지**

▪ 전환조건 :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을 **70%**, **130%**, **170%**의 비율로 조정 가능

※ 자세한 전환가능 조건은 본 안내문의 [붙임 1] 참고

▪ **제출서류 : 임대조건 상호전환 신청서** (공고의 붙임서류 참고)

▪ **제출방법 : 아래 방법 중 택1**

(방문제출) 부산도시공사 3층 임대사업처 ※ 영업일 내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이메일제출) 우측 수신주소로 이메일 제출 ※ 수신주소 : sangho@bmc.busan.kr

(이메일 제출분은 접수마감일의 18:00시까지 수신된 건만 유효합니다.)

▪ 문 의 : ☎ 051) 810-9905~8

▪ **신청기한 이후에는 상호전환의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전환을 신청한 사람의 계약금은 전환 후 임대보증금 금액의 20%입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기본 임대조건으로 확정됩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금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개인별 임대보증금의 2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계좌 : 개인별 가상계좌 번호 (**별도 안내** 예정)

▪ **납부기간 :** **2026. 12. 2.(수) ~ 12. 4.(금) 16:00**

▪ 계약금의 입금 시 계약자 본인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금은 정해진 금액을 **한번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초과입금 등의 경우 처리불가

▪ [**전자계약**하실 분] → 계약체결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계약금을 입금

▪ [**현장계약**하실 분] → 계약체결 방문 전까지 계약금을 입금

(입금증 등 입금사실을 확인할 서류나 통장, 모바일앱 필수 지참)

▪ 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환불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전자계약]

▪ **계약기간 : 2026. 12. 3.(목) 10:00 ~ 12. 7.(월) 16:00**

1) 계약체결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계약금 입금
(계약희망 당일 입금 시, 우리공사에 전자계약 요청 : ☎ 051) 810-9905~8)
※ 입금확인 및 전자계약 발송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체결 전일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체결 당일에 전자계약 알림톡 확인 (오전 10시 예정)

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접속

4) 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 (부과된 임대조건 필수 확인)

5) 전자계약 서명 (계약체결 완료)

(계약 전일까지)		(계약체결일)		(계약체결일)		(계약체결일)		(계약체결일)
계약금 입금	→	**전자계약 알림톡 확인**	→	**전자계약 시스템 접속**	→	**계약서 내용 확인**	→	**계약서 최종 서명**

[현장계약]

▪ **계약기간 : 2026. 12. 3.(목) 10:00 ~ 12. 7.(월) 16:00**
※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계약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3층 임대사업처

▪ 계약체결 **방문 전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현장계약 시 구비서류**

공통서류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장·모바일앱 등 • 계약자의 도장 (본인 서명 시 생략가능) • 계약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서(공사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배우자 : 공통서류 외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사람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아래 서류 **(인감증명방식)** 본인(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증명서 상의 도장 날인) **(자필서명방식)** 본인(계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계약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현장계약 시 첫째날에 많은 인원이 몰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둘째날 이후에 방문을 권장드립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을 입금한 다음 날에 전자계약 알림톡이 자동 발송될 수 있습니다.
단, 알림톡을 수신한 경우에도 현장계약은 가능합니다.

계약 후 입주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등(P.5 위약금 부분 참고)에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유의사항

(일반사항)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입주 시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입주지정기간의 종료 후부터 2년간으로, 최초계약의 경우 실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 등 실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계약기간 조정을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0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증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소득구간에 따른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전까지 유지됩니다.
- 입주일부터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하지 않더라도 입주지정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임대조건 **상한대상자**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한 사람이 이후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소명절차 후 계약 해지, 부당이득 반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 향후 갱신계약 시에 소득을 조회하여 다시 임대조건이 결정되므로, 소득구간에 따른 임대조건의 변경으로 임대조건이 대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의 소득·자산의 산정시점 및 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 하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정보는 조회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간주합니다.
- 갱신계약 시에도 **최초 입주 시의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이 있거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수급자 등**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 시 단지 전체에 적용되는 임대시세는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재산정되므로, 개인의 소득구간 및 할증비율에 관계없이 임대조건 자체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에 입주 시의 입주자격에 따른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갱신계약 시점에 재산정된 소득구간에 따른 개인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와 같은 할증비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p 이하	105%	110%
	10%p 초과 30%p 이하	110%	120%
	30%p 초과	115%	130%

*30%p 초과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할증비율에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갱신 시 20%p를 더하여 할증하고 3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 할증

- 갱신계약 시에 입주자격에 따른 자산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갱신계약 시점에 재산정된 소득구간에 따른 개인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 할증비율을 적용하고,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의 금액은 적용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

-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에는 1개월 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전 퇴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퇴거 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는 수선유지에 대한 보수, 미납관리비 등의 정산을 위해 추후 지급됩니다.

(위약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표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입주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 [(임대보증금 × 이자율) / 12 + 해약 당월의 1개월분 임대료] × 24개월(2년) × 10/100(10퍼센트)
※ 이자율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기타사항

- 입주 시 잔금납부 및 계약자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절차(열쇠교부 등)를 진행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져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저층/고층 배정, 기타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재계약 시 포함)합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인(부산도시공사)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명도 후 입주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층별배치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일 이전에는 이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이 불가합니다.
-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단지 및 주변도로의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입주자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을 부산도시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제품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입주 전 설치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소유차량(세대구성원 명의의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의 타인소유 차량은 단지 내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으며, 별도로 저희 공사에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의 경우, 향후 해당 기관의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첨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Q. 계약 후에 입주하지 않고 해약이 가능한가요?

A. 계약 후 입주하지 않더라도 해약은 가능하지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 시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본문 유의사항의 위약금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11월 기준, 39A형 ⑤번 기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37,120,000원/월임대료 298,700원)의 경우에는 **887,63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며, 59A형 ⑥번 기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62,550,000원/월임대료 503,400원)의 경우에는 **1,495,890원**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Q. 잔금은 언제 내야하나요?

A. 잔금은 입주지정기간에 맞추어 납부하시면 되며, 잔금을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Q. 잔금 대출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저희 공사에서 별도로 보증금(잔금) 대출을 소개해드리진 않으며, 계약자께서 직접 금융기관에 문의 후 대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 동호수 변경은 가능한가요?

A. 당첨된 동호수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Q. 자격검증 이후 현재 소득이 없는데 부과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조정이 가능한가요?

A. 자격검증 이후의 세대원의 소득 변동 및 세대원 자체의 변동은 반영되지 않으며,
최초계약은 자격검증 시의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Q. 거주 중 자격변경이 가능한가요?

A.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시의 자격에서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청년 또는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혼인 및 나이에 관계없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 재계약(갱신계약) 시에 어떤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나요?

A. 최초 입주 시에 적용받은 입주자격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수급자 등**은 관련 증명서가 갱신계약 시점에도 발급 가능하여야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2인이 되지 않을 시에는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갱신계약 시점에 관련 법령의 변동으로 위 자격유지의 제한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재계약(갱신계약) 시에 할증이 되는 소득기준은 무엇인가요?

A. 최초 입주 시에 적용받은 입주자격이 소득조건의 기준이 됩니다. 단, 우선공급으로 당첨되어 계약한 입주자 등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할증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금액은 연도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평형별 임대조건

■ [39A, 39AH(주거약자용)] 임대조건

구분	기본 임대조건		비고		상호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 비율	임대보증금(원)	계약금(원)	월임대료(원)	
①	16,240,000 계약금 3,240,000원	130,700	1구간 표준	→	(감액) 70%	11,360,000	2,270,000	144,900	①
					(증액) 130%	21,110,000	4,220,000	106,300	
					170%	27,600,000	5,520,000	73,900	
②	18,560,000 계약금 3,710,000원	149,300	2구간 표준		(감액) 70%	12,990,000	2,590,000	165,500	②
					(증액) 130%	24,120,000	4,820,000	121,500	
					170%	31,550,000	6,310,000	84,300	
③	23,200,000 계약금 4,640,000원	186,700	3구간 표준		(감액) 70%	16,240,000	3,240,000	207,000	③
					(증액) 130%	30,160,000	6,030,000	151,900	
					170%	39,440,000	7,880,000	105,500	
④	30,160,000 계약금 6,030,000원	242,700	4구간 표준		(감액) 70%	21,110,000	4,220,000	269,000	④
					(증액) 130%	39,200,000	7,840,000	197,500	
					170%	51,270,000	10,250,000	137,100	
⑤	37,120,000 계약금 7,420,000원	298,700	5구간 표준		(감액) 70%	25,980,000	5,190,000	331,100	⑤
					(증액) 130%	48,250,000	9,650,000	243,000	
					170%	63,100,000	12,620,000	168,800	
⑥	41,760,000 계약금 8,350,000원	336,100	6구간 표준		(감액) 70%	29,230,000	5,840,000	372,600	⑥
					(증액) 130%	54,280,000	10,850,000	273,500	
					170%	70,990,000	14,190,000	189,900	

■ [39B] 임대조건

구분	기본 임대조건		비고		상호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 비율	임대보증금(원)	계약금(원)	월임대료(원)	
①	16,250,000 계약금 3,250,000원	130,800	1구간 표준	→	(감액) 70%	11,370,000	2,270,000	145,000	①
					(증액) 130%	21,120,000	4,220,000	106,400	
					170%	27,620,000	5,520,000	73,900	
②	18,570,000 계약금 3,710,000원	149,500	2구간 표준		(감액) 70%	12,990,000	2,590,000	165,700	②
					(증액) 130%	24,140,000	4,820,000	121,600	
					170%	31,560,000	6,310,000	84,500	
③	23,220,000 계약금 4,640,000원	186,800	3구간 표준		(감액) 70%	16,250,000	3,250,000	207,100	③
					(증액) 130%	30,180,000	6,030,000	152,000	
					170%	39,470,000	7,890,000	105,500	
④	30,180,000 계약금 6,030,000원	242,900	4구간 표준		(감액) 70%	21,120,000	4,220,000	269,300	④
					(증액) 130%	39,230,000	7,840,000	197,600	
					170%	51,300,000	10,260,000	137,300	
⑤	37,150,000 계약금 7,430,000원	299,000	5구간 표준		(감액) 70%	26,000,000	5,200,000	331,500	⑤
					(증액) 130%	48,290,000	9,650,000	243,300	
					170%	63,150,000	12,630,000	169,000	
⑥	41,800,000 계약금 8,360,000원	336,300	6구간 표준		(감액) 70%	29,260,000	5,850,000	372,800	⑥
					(증액) 130%	54,340,000	10,860,000	273,600	
					170%	71,060,000	14,210,000	190,000	

■ [49A] 임대조건

구분	기본 임대조건		비고	상호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 비율	임대보증금(원)	계약금(원)	월임대료(원)	
①	**20,210,000** 계약금 **4,040,000**원	**162,600**	1구간 표준	(감액) 70%	**14,140,000**	2,820,000	**180,300**	①
				(증액) 130%	**26,270,000**	5,250,000	**132,300**	
				170%	**34,350,000**	6,870,000	**91,900**	
②	**23,100,000** 계약금 **4,620,000**원	**185,900**	2구간 표준	(감액) 70%	**16,170,000**	3,230,000	**206,100**	②
				(증액) 130%	**30,030,000**	6,000,000	**151,200**	
				170%	**39,270,000**	7,850,000	**105,000**	
③	**28,870,000** 계약금 **5,770,000**원	**232,300**	3구간 표준	(감액) 70%	**20,200,000**	4,040,000	**257,500**	③
				(증액) 130%	**37,530,000**	7,500,000	**189,000**	
				170%	**49,070,000**	9,810,000	**131,300**	
④	**37,530,000** 계약금 **7,500,000**원	**302,000**	4구간 표준	(감액) 70%	**26,270,000**	5,250,000	**334,800**	④
				(증액) 130%	**48,780,000**	9,750,000	**245,700**	
				170%	**63,800,000**	12,760,000	**170,600**	
⑤	**46,200,000** 계약금 **9,240,000**원	**371,800**	5구간 표준	(감액) 70%	**32,340,000**	6,460,000	**412,200**	⑤
				(증액) 130%	**60,060,000**	12,010,000	**302,500**	
				170%	**78,540,000**	15,700,000	**210,100**	
⑥	**51,970,000** 계약금 **10,390,000**원	**418,200**	6구간 표준	(감액) 70%	**36,370,000**	7,270,000	**463,700**	⑥
				(증액) 130%	**67,560,000**	13,510,000	**340,200**	
				170%	**88,340,000**	17,660,000	**236,300**	

■ [59A] 임대조건

구분	기본 임대조건		비고	상호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 비율	임대보증금(원)	계약금(원)	월임대료(원)	
①	**24,320,000** 계약금 **4,860,000**원	**195,700**	1구간 표준	(감액) 70%	**17,020,000**	3,400,000	**216,900**	①
				(증액) 130%	**31,610,000**	6,320,000	**159,200**	
				170%	**41,340,000**	8,260,000	**110,600**	
②	**27,800,000** 계약금 **5,560,000**원	**223,700**	2구간 표준	(감액) 70%	**19,460,000**	3,890,000	**248,000**	②
				(증액) 130%	**36,140,000**	7,220,000	**182,000**	
				170%	**47,260,000**	9,450,000	**126,400**	
③	**34,750,000** 계약금 **6,950,000**원	**279,600**	3구간 표준	(감액) 70%	**24,320,000**	4,860,000	**310,000**	③
				(증액) 130%	**45,170,000**	9,030,000	**227,500**	
				170%	**59,070,000**	11,810,000	**158,000**	
④	**45,180,000** 계약금 **9,030,000**원	**363,600**	4구간 표준	(감액) 70%	**31,620,000**	6,320,000	**403,100**	④
				(증액) 130%	**58,730,000**	11,740,000	**295,800**	
				170%	**76,800,000**	15,360,000	**205,500**	
⑤	**55,600,000** 계약금 **11,120,000**원	**447,500**	5구간 표준	(감액) 70%	**38,920,000**	7,780,000	**496,100**	⑤
				(증액) 130%	**72,280,000**	14,450,000	**364,100**	
				170%	**94,520,000**	18,900,000	**252,900**	
⑥	**62,550,000** 계약금 **12,510,000**원	**503,400**	6구간 표준	(감액) 70%	**43,780,000**	8,750,000	**558,100**	⑥
				(증액) 130%	**81,310,000**	16,260,000	**409,600**	
				170%	**106,330,000**	21,260,000	**284,500**	

■ [59B] 임대조건

구분	기본 임대조건		비고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①	**24,400,000** 계약금 **4,880,000**원	**196,300**	1구간 표준
②	**27,880,000** 계약금 **5,570,000**원	**224,400**	2구간 표준
③	**34,860,000** 계약금 **6,970,000**원	**280,500**	3구간 표준
④	**45,310,000** 계약금 **9,060,000**원	**364,700**	4구간 표준
⑤	**55,770,000** 계약금 **11,150,000**원	**448,800**	5구간 표준
⑥	**62,740,000** 계약금 **12,540,000**원	**504,900**	6구간 표준

➜

상호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비율		임대보증금(원)	계약금(원)	월임대료(원)	
(감액)	70%	**17,080,000**	3,410,000	**217,600**	①
(증액)	130%	**31,720,000**	6,340,000	**159,700**	
	170%	**41,480,000**	8,290,000	**110,900**	
(감액)	70%	**19,510,000**	3,900,000	**248,800**	②
(증액)	130%	**36,240,000**	7,240,000	**182,600**	
	170%	**47,390,000**	9,470,000	**126,800**	
(감액)	70%	**24,400,000**	4,880,000	**311,000**	③
(증액)	130%	**45,310,000**	9,060,000	**228,200**	
	170%	**59,260,000**	11,850,000	**158,500**	
(감액)	70%	**31,710,000**	6,340,000	**404,300**	④
(증액)	130%	**58,900,000**	11,780,000	**296,700**	
	170%	**77,020,000**	15,400,000	**206,100**	
(감액)	70%	**39,030,000**	7,800,000	**497,600**	⑤
(증액)	130%	**72,500,000**	14,500,000	**365,100**	
	170%	**94,800,000**	18,960,000	**253,600**	
(감액)	70%	**43,910,000**	8,780,000	**559,800**	⑥
(증액)	130%	**81,560,000**	16,310,000	**410,800**	
	170%	**106,650,000**	21,330,000	**285,300**	

임대조건 상호전환 신청서

1. 신청인(임차인) 인적사항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2. 임대조건 상호전환 신청정보

주택유형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 ☐ 매입임대 ☐ 50년공공임대 ☐ 재개발임대		
단지(주택)명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일광 동원로얄듀크)		
동 호	_____동 _____호		
임대조건 전환금액	임대보증금	금 _____원 ☐ 증액 ☐ 감액	
	월임대료	금 _____원	
(감액 시) 반환금액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작성 불필요	

본인은 위 주소지 주택의 임대조건 상호전환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도시공사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의사항	1. 상호전환 신청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며 미제출 시 표준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임대조건 상호전환은 신청서의 제출기한 이후에는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초계약 후의 임대조건은 재계약 시까지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수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생업 또는 질병치료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임차권이 양도되는 경우 3) 상속에 따라 계속거주를 위해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